

도시철도 유통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「철도물류산업의
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 촉구 건의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추승우 의원 외 40명

나. 의안번호 : 제1974호

다. 제출일자 : 2020. 10. 16.

라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2. 주 문

-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유통·물류산업 발전을 위
해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개정하여 차
량기지 내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고 민간 유통·물류기업이 활용할
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원활한 국가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
록 건의함

3. 제안이유

-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간 화물의 이동에서 지역 내 생활물류의 이동으로 물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 법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음
- 지역 간 이동인 광역철도에 기반을 둔 코레일의 경우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, 권역 내 이동에 기반을 둔 도시철도운영기관의 경우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정부지원에 대한 근거 법령이 미비한 상황임
-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물류 인프라 확충 등 한국판 뉴딜정책의 원활한 정책 이행을 위해, 철도물류산업법의 철도물류와 철도물류사업에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재정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「철도물류사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함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사업법」

나. 기타사항 : 해당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

- 서울시장(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) : 원안 동의
- ‘철도물류산업법’ 상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물류사업은 철도물류로만 한정되어 있어 ‘도시철도’가 제외됨

※ 철도 :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, 국가철도공단,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

- 본 건의안은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‘철도물류산업법’에 ‘도시철도’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으로, 건의안 취지에 동의함

5. 이 송 처

가. 국 회

나. 정 부 및 기타 : 국토교통부, 서울시

6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건의안은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물류 인프라 확충 및 한국판 뉴딜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철도물류산업법’)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 물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경제활동과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도심생활물류 증가는 물론 물류 및 유통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으로써 도시철도 차량기지를 활용한 물류시설의 단계적 구축이 중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임
- 정부도 택배 등 생활물류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‘18년 ‘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’¹⁾을 수립하여 도시권 물류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, ‘19년 ‘물류산업 혁신방안’ 발표 및

1) ‘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’(2018.3 국토교통부)

- 계획기간: 2018. 1~2022.12(5년)

- 주요내용: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등에 관한 사항, 물류시설의 공동화·집단화에 관한 사항 등

‘20년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’을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에 물류시설 개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, ‘20년 7월경에는 ‘한국판 뉴딜’ 정책²⁾의 28개 세부 과제 중 하나로 ‘스마트 물류체계 구축’을 추진하고 있음

- 서울시도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4조³⁾에 따라 '18년 ‘서울특별시 물류기본계획을’ 수립한 바 있으며, ‘20년에는 ‘도시철도시설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’⁴⁾을 통해 서울교통공사 차량기지 3개소(지축·도봉·모란)에 공동 택배분류장인 물류센터의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도시물류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경기도 대비 5% 수준인 서울의 물류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
- 이와 관련하여 ‘철도물류산업법’ 제17조⁵⁾에서는 “철도물류산업의

2) ‘한국판 뉴딜’ 정책(‘20년 7월 14일)

-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 프로젝트이다. 이는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, 그린 뉴딜, 등에서 분야별 투자와 일자리 창출, 안전강화 등을 도모하는 국가계획

3)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14조(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)

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8. 6.> ③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4) ‘도시철도시설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보계획’ 택시물류과-41148(2020.10.14.)

- 대상지 및 사업비: 20년 지축차량기지(39억) ▶ 21년 도봉차량기지(39억) ▶ 22년 모란차량기지(20억)
- 사업비 분담: 국비(30%), 시비(30%), 공사(40%)

5)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비용의 보조·감면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1. 선로 및 철도화물역의 건설 및 개량 2. 철도를 이용하는 화물의 운송·보관·하역을 위한 시설 투자 3. 철도물류시설의 현대화·자동화 및 표준화를 위한 투자 4. 철도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및 수송용기의 도입 및 개량 5. 그 밖에 철도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확충 및 개량

육성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물류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

- 다만, ‘철도물류산업법’ 제2조제2항6)에서 규정하는 철도물류시설은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(이하 ‘철도산업법’) 제3조제2호7)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‘철도산업법’ 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가 소유·건설·운영하는 철도에만 적용되고⁸⁾ 있는 상황임

- 따라서, 동 개정건의안은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 및 차량기지 등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물류사업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물류 인프라 확충 등 한국판 뉴딜정책의 원활한 정책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6)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 2. “철도물류시설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철도물류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

나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물류시설

7)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철도”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·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.

2. “철도시설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- 이하 생략-

8)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2조(적용범위)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.

1.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(이하 “고속철도건설공단”이라 한다)이 소유·건설·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

2. 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·건설·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